

계 시 판

제13회 전자산업인 가족 친선 등산대회 개최 안내

우리 진흥회는 전자산업인의 유대강화와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매년 전자산업인 가족 친선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그동안 많은 회원사 및 관련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명실공히 우리 전자산업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정착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대회를 적극 추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화합과 친목도모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금번 「제13회 전자산업인 가족 친선 등산대회」는 운암산(935.5M, 경기도 포천군 소재)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회원사의 산악회 및 임직원께서 참여하도록 지원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대회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하여 행사 찬조금 및 상품을 모금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대회개요】

- 대회명 : 제13회 전자산업인 가족 친선 등산대회
- 목적 : 전자산업인의 유대강화 및 노사화합을 통한 이해증진과 체력단련 및 명랑한 근로분위기 조성에 기여
- 일시 : 2000. 5. 20(토) 17:00 ~ 5.21(일) 17:00(1박 2일)
- 장소 : 운암산(935.5M, 경기도 포천군 소재)
- 주최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후원 : 산업자원부, 전자신문사,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참가규정】

- 참가자격 : 본회 회원사, 관련기관 및 단체 임

직원

- 참가부문 : 남자팀, 혼성팀, 여자팀
- 대회방법 : 4인 1조(팀) 경기
- 참가비 : 1개 팀당 50,000원
- 신청기간 : 2000. 4. 29(토)까지
(직접신청, 우송, 팩스신청가능)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총무부 윤동엽

- 전화 : 02)565-5804, 553-0941(대표)
교환 202.201.200
- 팩스 : 02)555-6195, 565-5804, 3452-2229, 563-7339

7. 참가비 및 협찬금 송부처

- 예금주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한국은행 : 102-52373-254

【준비규정】

- 개인 : 등산복, 등산화, 등산양말, 파카, 배낭, 신분증, 필기도구 등
- 조별 : 취사도구, 주·부식, 수통, 간식, 구급약품 등
- 사기 또는 산악회기(준비가능한 팀에 한함)
- 기타 등산에 필요한 도구
- 평가기준 : 추후통보, 임원참석시 가산점 부여

【역대실적】

연번	일시	장소	참가인원	최우수상
제1회	'89.11.26	유명산	45개팀 230명	동양정밀공업(※) 여자부
제2회	'90. 5. 2	청계산	51개팀 260명	한국아이비엠(※) 남자부
제3회	'90.11. 4	죽령산	56개팀 300명	한국아이비엠(※) 남자부
제4회	'91. 4. 28	감악산	48개팀 260명	(※)코리아싸이트 남자부
제5회	'92. 6.13~14	천미산	57개팀 300명	동방전자산업(※) 남자부
제6회	'93. 5.15~16	청계산	36개팀 250명	동양전자통신(※) 남자부
제7회	'94. 5.22	도봉산	41개팀 260명	삼성전자(※) 남자부
제8회	'95. 6.10~11	차악산	40개팀 250명	삼영전자공업(※) 혼성부
제9회	'96. 5.18~19	명성산	50개팀 280명	삼영전자공업(※) 여자부
제10회	'97. 5.10~11	천미산	50개팀 320명	삼성전자(※) 남자부
제11회	'98. 5. 9~10	화야산	48개팀 280명	대우전자(※) 혼성부
제12회	'99. 5.15~16	유명산	30개팀 210명	대우전자(※) 남자팀

개시판

불공정수출입행위 신고·조사 제도 안내

WTO 체제 이후 국내외 무역 시장이 개방화·자유화되면서 불공정한 수출입 행위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한 수출입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불공정 수출입 행위 조사·신고 제도”를 안내합니다.

- 다음 -

불공정수출입행위 유형

▼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행위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행위(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원산지 표시를 위배한 물품의 수출입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허위 표시, 표시 손상 및 변경한 경우
-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87조 제2호·제3호)

▼ 기타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 품질 등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 대외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수출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행위
- 수출입 선적서류의 허위 발행, 위조, 변조 및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 물품의 인수 행위(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7조)

신고자격 및 방법

▼ 이해 관계가 있는 “무역 거래자, 생산업자, 관련 조합·협회, 운송인 및 보험업자”는

- 무역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주소, 성명 및 사업 내용
- 피신고인의 불공정수출입행위 내용
- 불공정수출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등

▼ 신고 기한은

-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180일 이내 이거나,
-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

제재수단

◎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판정 후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55조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징금 부과

-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기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통관의 보류(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무역위원회 활용 시 장점

▼ 신고 절차의 간편, 조사의 신속성

- 무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 조사 및 처리
- 법원의 소송과는 달리 신고서류 및 절차 등의 간편

▼ 구제 효과 광범위

- 무역위원회의 구제 조치는 해당 품목 취급자 전

체에게 효과가 있음

당사자간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판과는 달리, 무역위원회의 제재효과는 당해 물품 취급자 모두를 규제함

▼ 비용의 절감효과

-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신고서류작성 및 대응 가능

▼ 신고관련서류 비공개 처리

-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는 제출자가 원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노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조사신청 및 문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 전화 : 02)500-2599, 2598(FAX:02)504-1213)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절차도】

- | | |
|-----------------------------------|--|
| 불공정수출입행위
신고 또는 정보접수
(무역조사실) | · 이해관계인의 신고
· 타기관의 요청 또는 직권조
사 등 |
|-----------------------------------|--|

- | | |
|----------------------|--|
|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조사실) | · 신고자격, 신고기간 등 검토
· 불공정수출입행위 인정사유 등
검토 |
|----------------------|--|

- | | |
|--------------------------|--|
| 무역위원회
안건상정
(무역조사실) | · 서면조사 원칙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조사단구
성, 현장방문, 관련서류 징구 등
병행 |
|--------------------------|--|

- | | |
|--------------------|--|
| 심의 · 의결
(무역위원회) | · 조사결과 심의 및 제재수준 결정
· 무역위원회 결정사항 관계기관
에 통보 |
|--------------------|--|

- | | |
|---------------------|--|
| 제재실행
(관계행정기관의 장) | ·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 통관보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
|---------------------|--|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97-63('97. 4. 20)호 정밀기술진흥사업 지침에 의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의 후원과 전자산업진흥회 등의 추천으로 다음과 같이 매년 정밀기술진흥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다 음 -

I. 정밀기술진흥대회

1. 목적

- ▼ 산업자원부 고시 제 97 - 63호 ('97. 4. 21)
의거
- ▼ 고도화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정밀제품(설계) 기술』, 『정밀생산기술』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관련업계에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대회분야 및 참가대상

분야	참가내용	참가대상	비고
정밀제품 기술분야	정밀기술(가공, 조립, 설계, 합성, 분석, 측정, 제어 등)을 근간으로 하여 제품의 신기능 창출, 소형화, 다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실현한 개발제품 (예:정밀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제품, 정밀전기 전자제품, 정밀광학제품, 정밀소재제품 등)	전산업체	
정밀생산 기술분야	제품개발 및 생산에 응용되는 기술 중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술 이며 각 산업의 기반기술로서 장기간의 기술축적 및 Know-How를 요구하는 전문 단위기술. (예:정밀가공기술, 정밀합성기술, 정밀제어기술 등)	전문기술보 유업체, 대 학 및 연구 소, Working Group	

※'99년 산업 재해율이 동종업종평균 이상인 업체

개시판

는 수상대상에서 제외됨. 단, 전년(‘98)보다
재해율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는 무관함

3. 심사방법

- ◀ 1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 전문소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 2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 전문위원회에서 발표대회 심사
- ◀ 3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한 정밀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4. 심사항목

- ◀ 출품제품(기술)의 정밀설계기술, 재료 및 부품기술, 요소기술, 가공기술개발 등의 기술수준, 난이도, 자급률, 유일성, 성능 등의 기술성(80%)
- ◀ 관련 산업, 국가경쟁력, 부가가치창출 등의 상품성과 과급효과(20%)

5. 대회 일정

- 가. 개최공고 : 3월 13일
- 나. 접수기간 : ~ 4월 29일
- 다. 1차 평가 : 6월 15일 ~ 16일
- 라. 발표대회 : 6월 27일 ~ 28일
- 마. 최종심의 : 7월 19일(정밀기술심의위원회)
- 바. 시상 : 11월 중 (COEX 국제회의실)

6. 시상 내용

- ◀ 대상(대통령상) : 2업체, 우수상(국무총리상) : 2업체,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 5업체, 은상(중소기업청장상) : 6업체, 동상(산업기술시험원소장상) : 7업체

◀ 유공자 표창

산업훈장 : 2명, 산업포장 : 2명, 대통령상표창 : 4명, 국무총리상표창 : 4명,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4명, 중소기업청장표창 5명 (정부 포상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특전

- ◀ 산업기술대전 전시공간 무료 활용
- ◀ 정밀기술 등급 부여
- ◀ 산업기술시험원의 각종지원 (ISO인증, K-Mark인증 품목지정 등)
- ◀ 주요 구매기관에 우선 구매 알선

8. 주최 및 후원

- ◀ 주최 : 산업기술시험원
- ◀ 후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
- ◀ 추천기관 : 산업자원부 산하 단체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가나다순)

9. 참가신청 요령

- ◀ 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2호)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주최기관에 제출. 단, 비회원 업체는 직접제출 가능
- ◀ 참가신청 양식은 인터넷 <http://www.kti.re.kr> 정밀기술진흥대회에서 다운로드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 이외에는 비공개
- ※ 문의 : 산업기술시험원 표준계측센터 기계계측팀(Tel 8601-510, 506, 507, 508)

1999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 안내

정부에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제26차 광공업통계조사 실시기간으로 정하고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지난 1년 간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변동과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사 결과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며 개발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오니,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올바른 국가 경제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사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조사범위 및 대상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광업, 제조업 사업체

■ 조사대상기간

1999. 1. 1 ~ 12.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2000. 5. 1 ~ 5.31(31일간)

■ 조사사항

출하액, 생산비, 재고액, 유·무형자산, 기술연구개발비 등 17개 항목

■ 조사방법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조사

첨단반도체 Package/LCD용 소재개발

지난 25년 간 재료공학분야(분말야금)의 소재분야 개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기대가 되는 소재분야회사에 기술지원, 기술

이전형태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택된 Item을 가지고 Venture기업을 창업(설립)하고자 하오니 동참할 기업이나 창업투자사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ITEMs

- 첨단반도체 Package(BGA, CSP 및 Flip Chip 패키지) 용 소재 제조기술(Pb-free계 Solder Ball)
- 표면실장용 Solder Powder 제조기술(Pb-free계 Solder Powder)
- TFT LCD용 소재 제조기술(OIing성 도전입자, Spacer)
- Conductive paste용 소재 제조기술(Ag, Pd 및 Ag-Pd 분말)
- Conductive Particle 제조기술(Solid Core Solder Ball)
- MLCC용 소재 제조기술(BaTiO₃, Ni, Co 및 Fe분말)
- Ball Pen용 초경합금 및 Ceramic Ball 제조기술
- 열전재료용 소재개발(Bismuth Telluride분말)
- 전기저점용 소재 제조기술(Ag-SnO₂, Ag-CdO 입자)
- 용접재 제조기술(Al-Si분말, BCu-P 분말)
- Alkaline-Manganese Battery용 소재 제조기술(Zn, Pb 분말)
- Filter용 소재 제조기술(Cu-Sn Ball)
- 산업용 Shot 제조기술(Al Shot, Zinc Shot, Steel Shot)
- Paint용 Paste 제조기술(Al Paste, Cu-Zn Paste, Zn Paste)
- Nanosized Metal Powder 제조기술(Ag, Cu, Ni분말)
- 분말제조설비 설계, 개발 및 시공(Gas atomiser, Ultrasonic atomiser, Centrifugal atomiser)

■ 문의 : 울산대학교 재료금속공학부 신소재연구실 정은 교수[Tel. 052)259-1663]

200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공고

(사업지원부공고 제2000-53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분야의 신규지원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 / 시 / 판

1.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이란?

부품 · 소재기술개발사업이란 Global Sourcing 참여가능 품목, 생산자간 경쟁확대 필요품목, 기술과급 효과가 큰 품목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비를 무담보 · 무이자로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30%~50%)를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과제

- 공기압 Solenoid밸브
- 세척기용 초음파 발생장치
-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 터보분자 펌프
- LM모터
- 초정밀 배터리 케이스
- 광드라이브의 Fast seek speed용 헤드 및 테크
- 고속홀로그래픽유니트용 광학렌즈부품
- 터보 고속 디젤엔진용 연료분사장치
- 배기 후처리 시스템
- 구명정용 급속개방장치
- Deep Fat Fryer, Tilting Frying Pan, Dish Washing Machine
- 자동차용 센서(ABS, Steering System용 등)
- 테이퍼 롤러형 휠 베어링 유니트
- 상용차용 감속기(Retarder)
- 초음속 항공기용 착륙 시스템 부품
- 초음속 항공기용 연료 시스템 부품
- 초음속 항공기용 유압부품
- 중형헬기용 동력전달장치
- 발포금속을 이용한 자동차 충격흡수 Bumper Beam 및 상용차의 흡차음용 부품
- Drive-by-Wire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부품
- 자동차 내장용 흡/차음재의 통합 설계기술
- 반도체 장비핵심부품류

- 디스플레이용 부품 및 재료
- 소형정밀모터
- 2차전지
- PCB(장비핵심 부품포함)
- 전력용 초고속 다이오드 등 스위칭시스템 구성부품
- 폴리머부싱 등 고전압기기 첨단소재부품
- 전자재료
- 휴대폰용 부품 및 소자
- 메카니즘 모듈
- 센서
- 영구자석형 고속스핀들 모터 등 초고속 회전기부품
- 전력기기 진단유니트 등 고전압 계측장비부품
- 정보가전 Chip-Set
- 인터넷/미디어용 부품
- 광부품 및 재료
- ZnO 바리스터 등 초고압대용량 전력기기부품
- 전기제어 감시장치 부품
- 단결정성장 초전도 마그네트
- Arm Insulator 등 첨단소자부품
- Shadow Mask/Lead Frame용 Invar 합금 극박판
- 환경친화적인 무연내식 활동 · 청동 소재 기술
- 화력발전소용 내열 합금소재
- 알루미늄 압출재를 이용한 자동차 및 선박 구조용 소재
- 고품위 초경합금 공구소재(indexable/twist drills, slitting saws)
- 표면실장용 무연(Pb-free) 솔더 소재
- 3 Liter Hybrid Car용 경량 Suspension arms 소재
- Projection TV용 ARAS 코팅기술
- 6가 Cr대체용 프라즈마 · PVD코팅기술
- 정밀 금형 및 반도체 금형 열처리
- Diels-Alder 반응을 이용한 첨단소재 PEN 원료
- 환경친화형 염료
- 접착성, 내후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건축용 고

분자소재

- 반도체용 초극세사 Wiper
- 환경산업용 고성능 필터소재
- 도전용 paste 및 액상봉지재
- 반도체용 고내열 필름·기판 소재
- 고집적 반도체 산업 소모성 부품용 고분자 소재
- 정밀기계용 세라믹 소재·부품
- 전자기부품용 세라믹소재
- TFT-LCD용 정밀화학소재
- 정밀부품 조립용 접착소재
- 차세대 복합소재
- 인체보호용 의류소재
- 고감성 고기능성 Wool-Touch 소재
- 탄소계 고기능 신재료
- 천연생리활성 화장품 소재 및 피부전달 시스템
- 초임계를 이용한 난염섬유소재
- 극선명 초미세 고부가가치 날염직물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총 350억원 내외에서 과제별로 조정 지원함
- 지원내용 : 개발자금지원/벤처캐피탈 투자지원/연구인력, 장비 등 종합지원
- 지원기간 : 3년이내

4. 신청자격

- 투자기관협의회 참여기관에서 투자가 가능한 기업을 원칙으로 함.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인터넷 : <http://www.itep.re.kr>

○ 신청서 접수방법

- 1 차 : 요약사업계획서 인터넷으로 등록
- 2 차 : 요약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우수과제에 한해 본 사업계획서 별도 신청

○ 접수기간

- 요약사업계획서는 3차례 걸쳐 접수하되 자금조진시에는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 1 차 : 2000. 4. 14(금) ~ 4. 18(화)
 - 2 차 : 2000. 6. 12(월) ~ 6. 16(금)
 - 3 차 : 2000. 8. 14(월) ~ 8. 18(금)

6. 유의사항

- 통합연구단과 기술개발 종합지원에 관한 지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투자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의 투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에 따름
- 기술료는 완료 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시점에서 정보출연금의 50%를 5년(중소기업의 경우 30%를 3년) 균등분할납부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내용이 기개발되었거나,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신청된 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Tel.500-2444)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Tel.8298-651/6)